

자산관리 위탁계약 변경계약서

(주)삼정대한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이하 “갑”)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(이하 “을”)는 “갑”, “을”간 기체결한 자산관리 위탁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.

- 다 음 -

1. 변경내용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
제9조 (수수료) ②항 및 ③항 신설	“갑”은 “을”의 자산운용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불임 1과 같이 보수를 지급한다.	① “갑”은 “을”의 자산운용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불임 1과 같이 보수를 지급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, “갑”은 불임 1의 수수료 지급을 중단한다. 1. “갑”과 “을”이 체결하는 표준사업약정서(자리츠용)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“을”이 임대 및 매각부진에 대한 대책(시장상황, 이행기간 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판매촉진대책수립 등)을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2. “갑”의 모리츠로부터 수수료 지급중단 요청이 있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급 중단된 수수료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“갑”의 모리츠가 동의하는 경우 또는 표준사업약정서(자리츠용)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, 일괄지급한다.
불임 2. 계약의 해지 2-1 계약해지 사유 (3) 신설	-	(3) “갑”과 “을”이 체결하는 표준사업약정서(자리츠용)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른 자산관리위탁계약 해지 요구가 있을 경우

2. 기타

본 변경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체결한 자산관리 위탁계약서를 따르기로 한다.

“갑”과 “을”은 위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,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

이행할 것을 약속하며, 이 변경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산관리 위탁계약 변경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붙임. 기체결 자산관리 위탁계약서 사본 각 1부.

2024. 5. 31.

“갑”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, 33층(삼성동, 아셈타워)
(주)삼정대한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대표이사 이 기 환



“을”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, 33층(삼성동, 아셈타워)
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
대표이사 박 중 철

